

## 유전단백체연구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운영 규정

2019. 09. 24. 제정

<유전단백체연구센터, 신학지원부>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센터는 “핵심연구지원시설은 유전단백체연구센터”(영문명: Center for ProteoGenome Research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이라 하고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 내에 둔다.

제 2 조 (목적) 이 센터는 고려대학교가 보유한 유전단백체 연구 플랫폼 장비들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, 대학의 유전단백체 기초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(사업) 이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 장비의 관리 운영
2. 센터 장비의 구입, 설치 및 공동 이용
3.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
4. 공동 연구를 위한 장비 이용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센터장)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 조 (조직)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둔다.

제 6 조 (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센터참여교수 등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
제 7 조 (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기본계획
2. 센터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
3. 센터 예·결산에 관한사항
4. 신규장비 구축 및 센터장비 유지·보수 및 성능개선 사항
5. 센터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8 조 (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)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제 9 조 (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) 센터참여교수 중 교육위원장을 선임하며, 교육위원장은 기기운용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제 10 조 (재정) 센터의 재원은 정부지원 연구비, 대학 대응연구비, 공동활용서비스 수익, 그리고 장비비품 링제 재원으로 구성된다.

제 11 조 (서비스 요금 등 징수) 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동활용서비스료를 수입한다.  
② 공동활용서비스는 ZEUS 시스템을 통해 수입하며, 대학내 센터의 공동활용서비스 계정에 적립한다.  
③ 교육과정 운영경비, 실험실습재료비 및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규정개정 및 준용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이 정한 후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및 고려대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3 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단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4 조 (운영체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